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가단52677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변론 종결2021. 3. 10.

판결 선고2021. 4.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2020. 4. 12.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45,3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차전1612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26. 'C은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13.부터 1999. 8. 31.까지 연 16.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5. 16. 확정되었다.

2)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는 2020. 6. 29. 기준으로 128,403,332원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C의 배우자인 D이 2020. 4. 12. 사망함으로써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C이 3/5, 자녀인 피고가 2/5 지분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2020. 4. 12. C과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3. 피고 앞으로 2020. 4.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4. 채권최고액 140,4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20. 4. 23. 말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3/5 지분)을 포기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피고는 C의 상속포기가 수리된 후 피고 단독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기로 하여 그 업무처리를 법무사에게 맡겼는데 법무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피고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여 피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을 배상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 말소 등의 사유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4. 12.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3/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2020. 4. 2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5 지분의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3) 구체적 가액의 산정 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및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71,500,00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95,87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75,625,000원(= 171,500,000원 - 95,875,000원) 중 C의 상속분 3/5 지분에 해당하는 45,375,000원(= 75,625,000원 x 3/5)이 공동담보가액이 되고,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6. 29. 기준 128,403,332원임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45,375,000원이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3/5지분에 관하여 2020. 4. 12.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45,3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5,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백규

별지